

자영업자와 조세 부과의 형평성*

김태일**

김도균***

본 글에서는 소득세와 부가가치세가 실제로 불공평하게 부과되고 있는지를 분석하고 향후 증세를 위한 시사점을 논의하였다. 우리나라의 조세부담률이 낮은 편이며, 계속 늘어나는 국가채무를 억제하고 향후 예상되는 재정지출 확대에 대비하려면 증세가 필요하다는 데는 대부분의 전문가가 동의한다. 그러나 증세는 매우 힘들다. 증세에 대한 국민들의 반감이 크기 때문이다. 증세 반감의 이유 중 하나는 세금 부과가 불공평하다는 인식이다. 불공평한 세금 부과 인식의 대표적인 것으로서 ①임금근로자는 자영업자보다 소득세를 많이 낸다, ②부가가치세는 자영업자가 부담한다는 것을 들 수 있다.

본 글에서는 이러한 두 인식이 사실과 부합하는가를 분석하였다. 자영업자가 소득을 축소 신고하기는 하지만, 임금근로자의 소득공제가 자영업자보다 더 많다. 그래서 축소신고와 소득공제를 모두 감안해서 비교하면, 소수 고소득계층을 제외하면 자영업자의 소득세 부담액이 더 많았다. 그리고 부가가치세는 자영업자의 인식과 달리 소비자가 부담하며, 향후 부가가치세 인상에서는 소비자 부담임을 명확히 해야 함을 논증하였다. 그리고 이러한 분석을 바탕으로 향후 제대로 된 조세정치의 필요성을 논의하였다.

주제어: 자영업자, 소득세, 조세 형평성, 부가가치세

* 이 논문은 2013년 정부(교육부)의 재원으로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임 (NRF-2013S1A3A2052898).

** 제1저자, 미국 Carnegie Mellon 대학교에서 정책학 박사학위를 취득하고, 현재 고려대학교 교수로 재직 중이다. 주요 관심분야는 예산과 재정, 사회정책 등이다(tikim@korea.ac.kr)

*** 교신저자, 서울대학교에서 사회학 박사학위를 취득하고, 현재 경기연구원 연구위원으로 재직 중이다. 주요 관심분야는 재정사회학, 가계부채, 고령화 등이다(dkkim@gri.re.kr)

I. 서론

우리나라의 복지지출 수준이 OECD 국가 중 최하위권이라는 것은 잘 알려진 일이다. 2013년 OECD 복지지출 평균은 21.8%인데 한국은 10.2%로 절반에도 못 미친다. OECD 최하권인 복지지출 수준은, OECD 최고수준인 노인 빈곤율과 양극화, OECD 최저 수준인 출산율과(양육기 자녀를 둔) 여성 고용률 같은 우리 사회의 심각한 사회 문제와 직결된다.

이에 따라 복지를 확대해야 하며 그를 위해서는 증세가 필요하다는 것은 이 분야 전문가들 대부분이 동의하는 사실이다. 복지 확대를 하려면 증세가 필요하다는 것은 분명하다. 하지만 복지를 확대하지 않더라도 국가채무를 더 늘리지 않으려면 역시 증세가 필요하다. 우리나라 재정은 2008년 이래 작년까지 매년 적자(관리재정수지 기준)였으며, 그에 따라 국가채무는 계속 늘어났다. 앞으로도 특별한 세입 확충 정책이 없는 한 적자를 보전하기는 어렵다. 더구나 급속한 고령화에 따라 복지제도를 더 이상 확대하지 않아도 복지 수요는 계속 늘어난다. 예를 들면 사회보장기본법 개정에 의해 2013년부터 정부는 격년으로 사회보장 장기재정추계를 시행하고 발표하는데, 첫 추계 결과 발표가 2014년 1월에 이뤄졌다. 그에 따르면 현행 제도를 그대로 유지하더라도 GDP 대비 복지지출 비중은 2040년 22.6%로 전망된다. 따라서 증세 없이는, 재정적자 규모가 향후 더욱 커질 수밖에 없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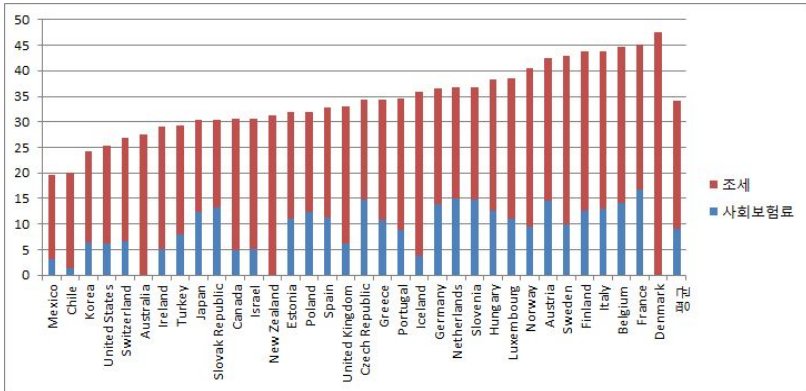
증세 필요성은 전문가, 관료, 정치가 대부분이 알고 있다. 하지만 증세는 어렵다. 세금 올리데 대한 국민들의 반감이 워낙 강한 탓이다. 물론 세금 내길 좋아할 사람은 없다. 그러나 우리나라 국민들은 유독 심하다.

〈그림 1〉에 나오듯이 우리나라의 조세와 사회보험료 수준(국민부담률)은 OECD 국가들 중에서 가장 낮은 편에 속한다. 2013년 한국의 국민부담률은 24%인데 비해 OECD 평균은 34%다(조세만 따지면 한국 18%, OECD 평균 25%).

우리나라 국민들의 증세에 대한 반감이 유난히 큰 데는 몇 가지 설명이 가능하다. 정부에 대한 불신이 가장 큰 이유일 것이다. 이를테면 세금 올려야야 필요한 데 요긴하게 쓰이기보다 이 구멍 저 구멍으로 빠져나가는 게 더 많을 것이라는 생각 때문일 것이다. 그런데 그에 못지않게 중요한 것은 세금 부과가 불공평하다는 인식 때문일 것이다. 예를 들면 2015년 2월 한국일보와 한국재정학회와 여론조사기관 코리아리서치에 의뢰해 전국 19세 이상 성인 남녀 1,032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세금 복지 관련 대국민 인식조사’를 보면 국민 절반 이상은 복지를 위해 필요하다면 세금을 현재보다 더 낼 의향이 있는지에 대해 53.4%는 세금 더 낼 의향 있다, 45.4% 더 낼 의향 없다

고 답하였다. 세금을 더 낼 뉼 의향이 없는 이유로 1위는 ‘세금이 적재적소에 쓰이지 않을 것 같아서’(38.4%), 2위는 ‘결과적으로 부자 감세, 서민 증세로 느껴져서’(27.6%)였다.

〈그림 1〉 OECD 국가들의 국민부담률(조세+사회보험료 수준, 2013년 기준)



OECD.Stat(<http://stats.oecd.org/>)에서 해당 항목 발췌.

공평한 세금 부과와 기본은 부담 능력에 상응해서 낸다는 것이다. 그래서 더 많이 벌면 더 많이, 동일하게 벌면 동일하게 내야 한다는 것이다. 더 많이 벌면 더 많이 내야 하는 것을 수직적 형평성, 동일하게 벌면 동일하게 내야 하는 것을 수평적 형평성이라고도 한다(Musgrave, 1959 참조). 엄밀하게 따지면 수직적, 수평적 형평성은 소득 자체보다는 부담 능력으로 따진다. 부담 능력과 소득 크기가 일치하는 것은 아니다. 수입이 동일해도 부양가족이 많은 사람은 적은 사람보다 세 부담 능력이 적을 것이다. 그래서 부양가족이 많으면 세금을 더 많이 감면해 준다. 그런데 우리나라의 세금 부과에서는 이런 원칙이 잘 지켜지지 않는다는 것이 많은 사람들의 생각이다.

세금 부과가 불공평하다는 인식의 대표적인 예가 소득세에서 자영업자와 임금근로자의 차이다. 임금근로자는 유리지갑이라 한 푼 숨기는 것 없이 그대로 내지만, 자영업자는 매출축소와 경비처리 등으로 소득에 비해 아주 적은 세금만 낸다고 생각한다(예. 박명호, 2010; 전승훈 신영임, 2009; 신영임 강민지, 2014 논의 참조)

이에 대해 과거에는 자영업자의 소득세 탈루가 심했지만, 이제는 신용카드 및 현금영수증 사용 증가와 조세행정 발달로 그렇지 않다는 주장도 있다(예. 신영임 강민지, 2014; 홍순탁 2016 논의 참조). 하지만 여전히 매출축소를 통한 탈세 혹은 온갖 경비처리를 통한 절세를 함으로써, 동일 소득의 임금근로자보다 세금을 덜 내는 고소득 자

영업자를 주변에서 흔히 볼 수 있는 것도 사실이다.

그런데 자영업자에게도 임금근로자의 소득세 불만보다 더 큰 불만인 세금이 있다. 부가가치세다. 소비자가 상품을 구매하면 상품가격에 10%의 부가가치세가 붙는다. 즉 소비자가 지불하는 금액은 '상품가격+10%의 부가가치세'가 된다. 그래서 부가가치세는 소비자가 부담하는 세금이다. 이론적으로는 그렇다. 그러나 현실은 그렇지 않다. 아니 정확히 말하면 자영업자들은 그렇지 않다고 생각한다. 자영업자들은 부가가치세를 자신들이 부담한다고 인식한다(강희원, 2003 논외 참조).

우리나라의 국제 규모는 2014년에 206조 원이었다. 그 중에서 소득세가 54조원, 부가가치세가 57조원으로 둘을 합치면 전체의 절반이 넘는다(국세청, 국세통계). 이들은 각종 세금 중에서 가장 세수 규모가 큰 두 항목이다. 그러나 다른 OECD 국가들과 비교하면, 다른 항목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이 둘의 규모가 작다. 그래서 향후 증세 여지가 가장 큰 두 항목이기도 하다.

증세하려면 우선 국민들의 반감을 누그러뜨려야 한다. 그러려면 증세의 필요성을 설득해야 한다. 동시에 조세 부과의 불공평을 없애야 한다. 실제로 불공평하게 부과되고 있다면 부과체계를 바꿔야 하고, 사실은 아닌데 인식만 그렇다면 사실을 제대로 알려서 인식을 바꿔야 한다. 이것이 본 글의 문제의식이다. 그리고 본 글의 목적은 소득세와 부가가치세가 실제로 불공평하게 부과되고 있는지, 아니면 인식만 그런 것인지 따져 보고, 향후 증세를 위한 시사점을 논의하는 것이다.

본 글의 순서는 다음과 같다. 서론에 이은 2절에서는 본 글의 주제와 관련된 선행 연구들을 검토한다. 선행연구에서는 자영업자의 소득 탈루율 추정에 대한 연구와 부가가치세의 귀착에 관한 이론을 검토한다. 3절에서는 부가가치세 부담 주체에 대해 논의하며 4절에서는 자영업자와 임금근로자의 소득세 부과의 형평성을 분석한다. 결론인 5절에서는 이전까지의 논의를 정리하고 향후 이루어질 수 있는 증세에 대한 시사점을 논의한다.

II. 기존문헌 연구

본 글과 관련된 기존 연구에는 우선 자영업자의 소득(세) 탈루율 추정에 대한 것들이 있다. 자영업자의 소득세 탈루율 추정은 통계청의 가계조사와 같은 개별 가구(개인)의 서베이 자료를 이용하여 임금근로자 가구와 자영업자 가구의 소득과 소비지출을 비교함으로써 이뤄진다.

추정의 기본 논리를 약술하면 다음과 같다. 우선 임금 근로자의 소득과 소비는 사실대로 보고되었다고 가정하며, 자영업자는 소비는 사실대로 보고되었지만 소득은 과소 보고되었다고 가정한다. 그리고 동일한 소비 행태와 가구 특성(가구원의 구성 등)을 보이는 가구들은 소득도 비슷할 것이라고 가정한다. 이러한 가정 하에, 임금근로자의 자료를 이용하여 가구 특성을 통제된 소득과 소비의 관계를 추정한다. 그 다음에 이 추정 함수식에 자영업자의 가구 특성과 소비를 대입하여 자영업자의 '실제 소득수준'을 추정한다.

추정 모형식을 구성할 때, 소비를 종속변수로 하는지 소득을 종속변수로 하는지, 그리고 특정 소비 항목(식료품)만을 사용하는지 아니면 다양한 소비 항목의 연립방정식 체계를 구성하는지 등에 따라 소비함수 추정법, 소득함수 추정법(역소비함수 추정법), 앙겔곡선 추정법, 수요 방정식 추정법 등으로 구분된다.¹⁾ 각각의 추정기법을 적용한 국내연구들을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소비함수 추정법을 적용한 연구로는 가계조사 자료를 이용하여 1987년의 소득 탈루율을 추정한 현진권 나성린(1994), 1993~1995년 기간의 대우패널 자료를 이용한 이철인(1998)과 1996년과 2000년 가구소비실태조사 자료를 이용한 현진권 김용대(2003) 등이 있다. 그리고 소득함수 추정법을 적용한 연구에는 1997~1998년의 도시 가계조사 자료를 분석한 성명재 전영준(1999), 2003년 가계조사 자료를 분석한 노영훈 김현숙(2005), 2003~2008년 가계조사 자료를 분석한 전승훈 신영임(2009), 2003~2006년 가계조사 자료를 분석한 성명재(2008), 2008년 가계조사 자료를 분석한 성명재(2011), 2003~2012 기간의 가계조사 자료를 분석한 신영임 강민지(2014) 등이 있다.

앙겔곡선 추정법을 적용한 연구에는 1993년과 1994년 가계조사 자료를 분석한 유일호(1998), 1996년 가구소비실태조사 자료를 분석한 문춘걸 김영귀(2002), 2004년 가계조사 자료를 분석한 김형준 박명호(2007), 2000-2005 기간의 한국노동패널 자료를 분석한 김봉근외(2008), 2006~2008년 가계조사를 분석한 박명호(2010) 등이 있다.

이상의 연구들은 추정방법 외에도 자료와 분석시기가 다르다. 그래서 추정한 자영업자 소득탈루율 추정치도 서로 다르다. 그런데 이 중에서 동일하게 가계조사를 분석한 11개 연구들의 결과를 보면 시기에 따라 일정한 경향성을 발견할 수 있다. 2000년대 이전 시기의 자영업자 소득탈루율 추정치는 40%가 넘는다. 반면에 2000년대 초반 시

1) 이러한 구분은 신영임 강민지(2014)에 따른 것이다. 이어지는 각 방법을 적용한 논문들의 요약 정리에도 신영임 강민지(2014)의 '기존문헌연구' 편을 참조하였다.

기의 자영업자 소득탈루율 추정치는 30%대, 그리고 2000년대 후반 이후 시기의 자영업자 소득탈루율 추정치는 20%대를 보이고 있다.²⁾ 예를 들면 가장 최근 연구인 신영임 강민지(2014)를 보면 2012년의 자영업자 소득 탈루율을 20.8%로 추정하고 있다.

전술했듯 이들 연구는 가계조사와 같은 통계청의 서베이 자료에서 임금근로자가 구는 실제 소득을 그대로 보고하는데 비해 자영업자는 축소 보고한다는 가정 하에 추정을 한다. 즉 이들 연구가 추정한 자영업자의 소득 탈루율은 정확히 말하면 '가계조사 등 통계청의 설문조사에서 자영업자 소득이 임금근로자에 비해 얼마나 축소보고되었는가'를 추정한 것이다. 이에 대한 예외로서 성명재(2008, 2011)은 가계자료를 이용한 자영업자 소득 추정치 평균과 국세통계연보 자료로 계산한 자영업자 소득 평균치를 비교함으로써 소득 탈루율을 추정하였다. 따라서 가계조사 자료만을 이용하여 소득 탈루율을 구한 다른 연구들과 차별화된다. 그러나 가계조사와 국세통계연보의 모집단이 다르고, 또 미시자료가 아닌 평균치를 비교하는 데 따른 정보의 손실 등이 존재하여 이 방법 역시 한계를 지닌다.

따라서 이들 연구가 자영업자가 국세청에 신고하는 소득의 축소 규모와 그에 따른 소득세 탈루율을 타당하게 추정하려면, ① 임금근로자의 통계청 서베이 보고소득은 실제소득과 일치한다, ② 자영업자의 통계청 서베이 보고소득은 국세청 신고소득과 일치한다는 두 가정이 현실과 부합해야 한다.³⁾

김낙년(2013)에서 밝히고 있듯 가계조사 자료에 고소득자는 과소 추출되며 표본에 포함된 고소득자의 보고소득도 실제보다 축소되는 경향이 있다. 따라서 고소득층의 경우 임금근로자의 보고소득은 실제소득과 일치하지 않는다. 또한 자영업자의 보고소득이 국세청 신고소득과 일치한다고 보기도 어렵다. Pissarides and Weber (1989) 등은 과세당국에 소득을 축소 신고한 자영업자는 비록 신분이 감춰지는 서베이가 보고소득이라도 마찬가지로 축소 보고하며, 서베이가 보고소득과 과세당국의 신고소득은 동일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자영업자가 임금근로자에 비해서는 서베이가 보고소

2) 가계조사를 분석한 연구들 중 2000-2002 기간은 추정치는 없다. 따라서 2000년대 초반은 2003-2005, 2000년대 후반은 2005-2012 기간을 의미한다. 시기별 소득탈루율은 각 연구들의 평균치를 기준으로 한 것이다.

3) 물론 여기에 더하여 임금 근로자와 자영업자의 소비 성향이 동일하다는 가정도 성립해야 한다. 이에 대해서는 두 집단은 소득의 안정성이 다르기 때문에 소비 성향이 다르다는 연구(예. Lyssiotou와, 2004; 배준호 홍충기, 1998)도 있지만, 대체로 유사하다고 보는 것이 현실에 부합할 것 같다. 한편 임금근로자와 자영업자의 전체적인 소비성향이 다를 수는 있지만, 식품 소비성향은 다를 이유가 없다는 전제하에 식품 소비와 소득의 관계를 이용하여 추정하는 것이 앵겔곡선 추정법이다. 이 추정법을 적용한 국외연구로는 Pissarides and Weber (1989)가 대표적이다.

득을 축소하는 경향이 있다고 해도, 축소 규모가 과세당국 신고소득과 동일하다고 할 만한 근거는 없다. 실제 성명재(2008)는 2003-2006 기간의 가계조사의 자영업자 보고소득을 국세청 신고소득과 비교했는데, 그에 따르면 자영업자의 국세청 신고소득은 가계조사 보고소득의 84%-96% 정도인 것으로 나타났다.⁴⁾

이상의 논의를 정리하면, 가계조사와 같은 통계청의 서베이 자료를 이용하여 추정된 자영업자 소득 탈루율은 실제 소득 탈루율의 하한(lower bound)을 나타내는 것, 즉 실제 소득 탈루율은 서베이 자료를 이용한 추정 소득 탈루율 이상이라고 보는 것이 타당할 것 같다.

한편 본 글과 관련된 주제의 기존 연구로는 부가가치세는 누가 부담하는가에 대한 것, 즉 부가가치세의 귀착 이론도 있다. 부가가치세 귀착에 대한 '이론' 자체는 초급 수준의 미시경제학책에 나와 있듯 단순하다.

부가가치세는 소비자가 부담한다. 따라서 부과된 세액만큼 수요곡선은 아래로 이동한다. 우상향하는 공급곡선과 우하향하는 수요곡선 하에서, 수요곡선이 아래로 이동하면 가격상승과 판매량 감소를 가져온다. 이에 따라 소비자와 공급자 모두 후생 손실(세 부담)을 겪는다. 각각의 크기는 수요와 공급곡선의 기울기(탄력성)에 좌우된다. 수요곡선이 탄력적일수록 공급자의 손실이 크고, 공급곡선이 탄력적일수록 소비자의 손실이 크다.⁵⁾ 이러한 부가가치세의 귀착 이론은 단순하며 논란의 여지도 거의 없다. 그런데 실재는 이론과 다르다. 그 이유는 부가가치세 역시 광범위하게 탈세가 이루어지기 때문이다.

연매출 4,800만 원 이하인 영세사업자는 간이과세자로서 일반사업자에 비해 부가가치세 부담이 적다. 이에 따라 실제 매출 4,800만원 이하 사업자뿐만 아니라 이를 초과하는 사업자도 간이과세자 대우를 받기 위해 매출을 축소하기도 한다. 실제든 축

4) 전술했듯 가계조사의 임금근로자 소득 소비 자료를 이용하여 추정된 자영업자 소득을 다른 연구들이 가계조사의 자영업자 보고소득과 비교하여 소득 탈루율은 계산한 것과는 달리, 성명재(2008)는 국세 통계 자료와 비교하여 추정하였다. 참고로 국세통계 자료와 비교한 성명재(2008)에서는 2003-2006 기간의 소득 탈루율이 35% 정도로 나온 데 비해, 가계조사의 보고소득과 비교한 신영임 강민지(2014)에서는 같은 기간의 소득 탈루율을 25% 정도로 나왔다. 물론 성명재(2008)의 분석이 국세통계 자료와 비교했다는 장점은 있지만, 다른 한계도 지닌다. 그래서 이 차이가 꼭 국세통계 자료의 신고소득이 가계조사의 보고소득보다 작기 때문이라고 하기는 어렵다.

5) 이에 대한 논의는 대부분의 재정학 혹은 미시 경제학 책에 기술되어 있는데, 본 연구진은 「로젠의 재정학」 9판 설명을 참조했다. 한편 이 설명은 부분균형분석에 대한 것이다. 일반균형분석은 직관적으로 이해하기 어려운데, 간략히 말하면 일반적인 부가가치세는 소득에 부과하는 세금과 마찬가지로 같다.

소신고 덕분에든 간이과세 사업자는 소비자가 지불한 부가가치세액보다 더 적은 금액을 납부한다. 따라서 부가가치세로 인한 부담의 일부가 공급자에게 전가되더라도 실제 부담분은 이론적인 전가액보다 작다(경우에 따라서는 더 이득을 볼 수 있다. 즉 부가가치세의 일부가 간이과세자의 수입이 될 수도 있다). 한편 일부 자영업자는 무자료거래를 한 뒤에 자료상을 통하여 세금계산서를 구입함으로써 부가가치세를 탈세한다.⁶⁾ 부가세 탈루 규모가 어느 정도인지는 알 수 없다. 국세청에 따르면 2013년 부가가치세 체납률은 13% 정도인데, 적어도 탈루율이 체납률보다는 높을 것이다.

Ⅲ. 부가가치세의 귀착

1. 부가가치세의 부담 주체

부가가치세(value added tax)는 명칭 그대로 생산과 유통의 각 단계에서 ‘더해지는 가치에 매기는 세금’이다. 이를 이해하려면 우선 부가가치세가 없을 경우 소비자에게 상품이 도달하는 과정을 따져봐야 한다. 백화점에서 점퍼를 구입했다고 하자. 점퍼가 나한테 오기까지 몇 단계를 거친다. 직물공장에서 만든 원단으로 의류공장이 옷을 만들고 도매상이 구매해서 소매점에 넘긴 걸 내가 구입했다고 하자. 그러면 원단공장 → 의류공장 → 도매 → 소매의 네 단계를 거친다(원단을 만들려면 또 그 이전에 실 생산 등의 단계를 거쳐야겠지만, 편의상 원단 생산까지는 하나의 공정으로 모두 이뤄진다고 가정하자). 각 단계를 거칠 때마다 가격은 올라간다. 가령 원단은 6만원, 의류공장은 12만원, 도매가는 15만원, 소매가는 20만원 식이다.

가격이 올라가는 것은 각 단계를 거칠 때마다 생산과 유통이라는 새로운 가치가 더해졌기 때문이다. 이러한 각 단계의 가치가 모두 합해져서 최종적으로 내가 구입하는 점퍼의 상품가격이 20만원이 된 것이다. 이제 여기에 10%의 부가가치세를 부과해 보자. 그럼 나는 상품가 20만원에 부가가치세 2만원을 얹은 22만원을 지불한다. 내가 부가가치세 2만원을 지불했지만, 실제 과세당국에는 원단공장이 6천원, 의류공장이 6천원, 도매상이 3천원, 소매상이 5천원 씩 납부한다. 그래서 원단공장은 의류공장에 원단을 넘기며 6만6천원을 받고, 의류공장은 도매상에 점퍼를 넘기며 13만 2천원, 도매상은 소매상에 점퍼를 넘기며 16만 5천원을 받는다.

6)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자료상은 폐업함으로써 세금을 내지 않는다.

이처럼 부가가치세 납부는 생산과 유통 과정에 참여하는 공급자가 한다. 그러나 세액을 지불하는 것은 엄연히 최종 상품을 구매하는 소비자다. 즉 부가가치세는 소비에 부과하는 소비세다.

소비자가 지불하는 세금인데, 왜 공급자가 싫어할까? 부가가치세가 부과되는 만큼 가격이 오르고, 가격이 오르면 수요가 감소하니 공급자들 입장에서 반기지 않는 것은 당연하다. 즉 부가가치세가 부과되면 직접 세금을 내는 소비자가 가장 손해지만, 공급자 역시 수요 감소로 손실이다. 하지만 그렇다면 소비자 반발이 가장 거세고 공급자 반발은 그보다 약해야 한다. 아니 소비자가 앞장서서 반대할 테니 공급자는 가만히 있어도 된다.

외국의 경우는 그렇다. 수년 전 일본에서 부가가치세를 인상했을 때, 앞장서 반발한 집단은 장바구니를 든 주부들이었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다르다. 1977년 부가가치세가 처음 도입되었을 때 격렬히 반대한 집단은 자영업자들이었다. 그리고 이후 부가가치세 인상을 못 했던 것 역시 자영업자들의 반발을 우려해서였다.

외국과 달리 우리는 소비자 대신 공급자, 그 중에서도 특히 자영업자들이 반대하는 것은 최종 상품가격의 책정이 앞서 설명하듯 이뤄지지 않기 때문이다. 그래서 실제로는 부가가치세를 소비자가 내지만 자영업자 입장에서는 자신이 내는 것으로 인식된다. 그리고 부가가치세가 인상되면, 인상분 100%를 가격에 반영하기 어렵다. 이를 이해하기 위해 <그림 2>의 커피와 삼겹살 영수증을 보자.

<그림 2> 커피와 삼겹살 영수증



커피 한 잔에 4,000원, 삼겹살 1인분에 8,000원이다. 여기엔 10%의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어 있다. 그럼 부가가치세를 뺀 상품 가격을 계산해 보자. 커피 한 잔은 3,636원, 삼겹살 1인분은 7,272원이다. 그런데 만일 부가가치세가 없었다면 커피 한 잔에 3,636원, 삼겹살 1인분에 7,272원을 받았을까? 아닐 것이다. 끝자리에 6원, 2

원까지 붙여가며 가격을 매기기는 힘들다.

소비자가 지불하는 최종 가격은 먼저 상품가격이 책정되고, 거기에 10%의 부가가치세를 더해져 정해지는 것이 아니다. 커피집 주인 입장에서는 부가가치세도 임대료, 인건비, 재료비나 마찬가지로 비용의 일부일 뿐이다. 장사하려면 임대료와 인건비를 내야 하듯이 부가가치세도 내야 하는 것뿐이다. 그래서 커피 가격은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제반 비용에다 마진을 붙이고 우수리는 떼어내서 책정한 것이다.

임대료나 인건비를 포함한 제반 비용은 어차피 커피 팔아서 번 돈으로 낸다. 이렇게 보자면 결국 모든 비용은 소비자가 지불한 셈이다. 하지만 커피집 주인 입장에서는 자신이 임대료와 인건비를 낸 것이지 소비자가 내준 것은 아니다. 마찬가지로 커피집 주인 입장에서 (자신 몫의) 부가가치세는 자신이 낸 것이지 소비자가 내준 것은 아니다.

2. 부가가치세 인상의 효과

앞의 예에서 봤듯이 우리는 메뉴 가격에 부가가치세를 별도로 명기하지 않는다. 그러나 외국의 경우는 부가가치세를 별도로 표기하는 경우가 많다. 상품가격을 먼저 정하고, 여기에 부가가치세가 더해진다. 그래서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최종 지불가격이 우리처럼 딱 떨어지지 않는다. 부가가치세를 붙이기 이전 상품가격이 딱 떨어지고, 붙인 다음에는 가격이 복잡해진다.

부가가치세 포함 가격을 제시하는 것과 별도로 나타내는 것, 즉 비용+마진으로 상품가격을 정한 다음 그 위에 부가가치세를 덧붙이는 것과 부가가치세+비용을 먼저 뽑고 여기에 마진을 더해 상품가격 정하는 것 사이에는 무슨 차이가 있을까?

둘의 차이는 앞으로 부가가치세를 인상할 경우 뚜렷이 드러난다. A가 운영하는 커피전문점의 프리미엄 커피 메뉴 가격이 부가세를 포함하여 5,500원이라고 하자. 만일 메뉴에 부가세를 별도 표시하면 '5,000원+부가세(10%) 500원'이 된다. 그런데 정부가 부가가치세율을 현행보다 5%p 더 높이기로 했다고 하자. 이 경우 메뉴에 부가세를 별도로 표시하면 '5000원+부가세(15%) 750원'이 된다. 반면 현행처럼 부가세 포함한 가격으로 표시하면 그냥 5,750원이다.

'5000원+부가세(15%) 750원'으로 나타내면 부가세율이 5%p 올라서 내가 지불하는 커피 가격이 250원 올랐다는 것이 소비자 입장에서 명확하다. 하지만 메뉴에 부가세 포함 가격으로 다르다. 일단 커피집 주인 A의 입장에서는 5,750원을 받기가 애매하다. 십의 자리는 끊어서 5,700원 아니면 5,800원을 받게 될 것이다. A 입장에서는 5,800원을 받고 싶지만 쉽지 않다. 세율 인상에 편승해서 가격을 더 올렸다는 비난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5,700원을 받기가 쉬운데, 이 경우 부가세는 250원을 더 내야 하는데 가격은 200원만 인상되므로 50원 손해다. 한편 5,700원을 받는다고 해도 소비자 입장에서는 종전보다 200원이 오른 것이니 불만이지는 않다. 하지만 그냥 가격이 올랐다고 생각하지, 세금이 올랐다고 생각하지는 않는다.

가격을 표시할 때 상품가격과 부가세를 분리해서 표시하면 부가세를 소비자가 부담한다는 게 명확하다. 그리고 부가가치세 인상분만큼 소비자 지불가격이 오른다. 그래서 공급자 입장에서는 비록 가격 상승에 따른 손님 감소로 손실을 보겠지만, 세금의 일부를 떠안지는 않는다. 그래서 부가가치세 인상에 대해서도 공급자들보다 소비자인 일반국민의 설득이 더 중요하다. 이에 비해 처음부터 부가세를 포함해서 가격을 책정하면, 부가세 인상분 그대로를 가격에 반영하기 힘든 경우가 발생한다. 일부는 공급자가 떠안게 될 수 있다. 그리고 부가세율이 올라서 가격이 올랐다는 것이 명시적으로 드러나지 않는다. 그래서 소비자보다 자영업자의 반대가 더 심하다.

3. 부가가치세 인상과 상품 가격

〈그림 1〉처럼 부가가치세 10%를 포함해서 커피 한잔 4,000원, 삼겹살 1인분 8,000원인데 부가가치세율을 5%p 더 올리면 어떻게 될까? 인상된 부가가치세율만큼 가격을 올린다면 각각 4,182원과 8,364원이 되어야 한다. 하지만 이렇게 가격을 책정하기는 현실적으로 힘들다. 적어도 십 단위 이하는 끊어야 한다. 인상된 세율보다 가격을 더 올리는 어려우므로 4,100원과 8,300원처럼 책정될 것이다. 이 경우 커피집과 삼겹살집 주인은 각각 82원과 64원 손해를 본다(물론 이 경우도 손님 감소로 생기는 손실은 고려하지 않은 것이다).

부가가치세는 처음 시행된 이후 한 번도 세율이 인상된 적이 없다. 그래서 세율 인상 시 가격이 얼마나 오르는 지에 대한 경험은 없다. 그래서 유일하게 참고할 수 있는 것은 부가가치세가 처음 시행되었을 때의 상황이다.

부가가치세가 시행된 1977년 당시는 인플레이션이 심했다. 높은 물가로 국민들의 생활이 어려운 상황에서 부가가치세 부과로 물가가 더 오르면 국민들이 격렬히 반발할 것이 예상됐다. 그래서 부가가치세는 시행되 그로인한 소비자 물가인상은 최대한 억제한다는 방침을 설정했다. 부가가치세 시행 이전 1년간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10.1%였는데, 시행 이후 1년간 소비자 물가상승률은 14.6%였다. 동대문 시장상인들이 집단으로 반발하고, 얼마 뒤 일어난 부마항쟁의 시위구호 중 하나가 “부가가치세 철폐하라”였다는 것을 상기하면, 부가가치세 부담의 상당 부분을 상인들이 떠안은 것

은 맞는 것 같다(레디앙 2009년 5월 19일자 기사 참조).

도입 당시 자영업자의 집단 반발 경험으로 부가가치세율은 이후 40년 가까이 그대로였다. 그 사이에도 몇 차례 인상을 검토했으나 결국에는 인상안을 철회했다. 하지만 앞으로 언젠가 될지는 모르겠지만 결국 부가가치세율을 올리는 해야 할 것이다. 40년 전에 비해 지금은 과세행정도 많이 발전했고 사람들의 지불행태도 크게 다르다. 이제는 부가가치세율을 올리면 거의 그대로 가격에 반영될 것 같다, 아니 되어야 한다. 치열한 경쟁 탓에 가격 올리기 어려운 구조라면 정책적으로라도 그대로 가격에 반영되도록 해야 한다.

물론 가격에 모두 반영되더라도 소비자만 부담을 지는 것이 아니다. 가격이 오른 만큼 수요가 줄 테니 공급업자들 역시 부담을 지는 셈이 된다. 그래서 앞으로 부가가치세를 인상할 경우는 두 부담 주체, 즉 소비자인 일반국민과 자영업자들 모두를 설득해야 한다. 그게 정당한 조세정치일 것이다.

IV. 임금근로자와 자영업자의 소득세 부과와 수평적 형평성

1. 임금근로자에게 유리한 소득공제 항목

전술했듯 우리나라의 조세 부담률은 OECD 국가들 중에서 아주 낮은 편인데, 그 중에서도 특히 소득세가 심하다. <그림 3>을 보면 명확하다. GDP 대비 소득세 비중이 OECD 평균은 8.5%인데 우리나라는 3.7%로서 절반에도 못 미친다.

<그림 3> OECD 국가들의 GDP 대비 소득세 비중(2013년도 기준)



OECD.Stat(<http://stats.oecd.org/>)에서 해당항목 발취

소득세 비중을 결정하는 요인은 다음의 네 가지다. ①전체 GDP 중 개인소득의 비중, ② 소득세율, ③ 소득공제 수준, ④ 소득 파악률. 우리나라의 낮은 소득세에는 네 가지 요인이 모두 작용한다. 우리나라는 다른 OECD 국가들에 비해 GDP 중 개인소득 비중은 작고, 소득세율은 낮았는데, 소득공제는 많다.⁸⁾ 그리고 소득 파악률은 낮다.

네 가지 요인 중에서 임금근로자와 자영업자 사이에 다르게 적용되는 것이 ③소득공제 정도와 ④소득 파악률이다. 물론 소득 파악률은 자영업자가 임금근로자보다 낮다. 이에 비해 소득공제의 경우 임금근로자에 대한 공제가 자영업자에 대한 공제보다 훨씬 많다.

소득공제를 간단히 정의하면 원래 내야 할 세금을 깎아주는 것이다. 이유는 두 가지다. 하나는 정부가 특정 정책을 장려하기 위한 유인책으로 사용하는 것이다. 또 하나는 소득세 부과의 형평성을 위해서이다. 특정 정책을 장려하기 위한 유인책의 예로는 연금저축과 신용카드 및 현금영수증 사용액에 대한 공제 혜택을 들 수 있다. 연금저축에 적용되는 공제 혜택은 스스로의 노후대비를 장려하기 위한 것이며, 신용카드 및 현금영수증 사용액에 대한 공제 혜택은 상거래의 투명성 확보를 위한 것이다.

수입은 같아도 개인 형편에 따라 담세능력은 다르다. 연봉은 똑같이 5,000만원이라도 독신인 사람과 가족을 부양하는 사람의 담세능력은 다르다. 그래서 부양가족이 있는 경우에는 공제 혜택을 부여해서 더 적은 소득세를 내도록 한다. 이처럼 소득은 같아도 담세능력에 따라 세금을 달리 매기는 것이 형평성을 맞추기 위한 소득공제다.

일반적으로 임금근로자는 소득이 모두 드러나서 축소 신고가 어렵지만 자영업자는 소득이 직접 드러나지는 않으므로 축소 신고하는 경향이 있다고 생각한다. 그렇다면 신고소득이 같다면 실제소득은 자영업자가 더 많을 것이다. 이 경우 신고소득을 기준으로 임금근로자와 자영업자에게 동일하게 소득세를 부과하면, 조세부과의 형평성을 훼손한다. 즉 신고소득이 동일하면, 자영업자가 더 많은 세금을 내도록 해야(혹은 임금근로자가 세금을 덜 내도록 해야) 형평성에 부합한다.

신고소득이 동일할 때, 임금근로자가 세금을 덜 내도록 하기 위해 소득공제 중 일부항목은 임금근로자에게만 적용하고 자영업자에게는 적용하지 않는다. 소득공제 항

7) GDP는 개인소득 이외에 법인소득과 (일부)국가수입으로 구성된다. GDP 중 개인소득 비중이 낮으면 개인소득에 매겨지는 소득세 크기도 그만큼 낮아진다.

8) 소득세율의 높고 낮음은 최고세율만으로는 알 수 없다. 그보다는 국민들에게 적용되는 (소득공제 이전의) 평균세율이나 소득계층별 세율로 따져야 한다. 우리나라의 소득세 최고세율 자체는 아주 낮은 편은 아니다. 그러나 대다수 국민에게 적용되는 세율은 상당히 낮다. 이는 OECD.Stat(<http://stats.oecd.org/>)에서 제공되는 다양한 계층에 대한 실효세율 비교 결과를 보면 뚜렷하다.

목 중에서 어떤 것이 모두에게 적용되고, 어떤 것이 임금근로자에게만 적용되는지는 <표 1>에 제시되어 있다.

<표 1> 임금근로자와 자영업자의 소득공제 항목 비교

공제항목	적용대상	근로소득자	사업소득자
근로소득공제		○	×
기본공제(본인, 배우자, 자녀)		○	○
추가공제(경로우대, 장애인, 부녀자, 한부모가족)		○	○
연금보험료, 건강보험료 공제		○	○
특별소득공제(보험료, 의료비, 교육비, 주택자금)		○	△
조세특례제한법상 소득공제(신용카드, 연금저축, 장기투자, 우리사주조합출연금)		○	×

임금근로자에게만 적용되는 대표적인 소득공제 항목이 '근로소득공제'다. 근로소득공제는 모든 임금근로자에게 적용되고 공제액이 커서, 임금근로자의 소득세를 줄여 주는 데 가장 큰 역할을 한다. 임금근로자에게만 '근로소득공제'를 두는 공식적인 이유는 자영업자의 필요경비 공제에 상응하는 항목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자영업자의 소득은 수입(매출)에서 사업상 필요한 경비를 제외한 나머지이다. 수입을 얻는데 들어간 경비를 제외하는 것은 당연하다. 그런데 자영업만큼은 아니지만 임금근로자 역시 일과 관련한 지출을 할 때가 있다. 하지만 임금근로자는 경비처리가 없다. 그래서 어느 정도 이를 보전해 준다는 개념으로 근로소득공제를 둔다는 것이다. 이 자체는 타당하다. 그런데 사실 임금근로자가 자기 돈으로 하는 업무관련 지출액은 많지 않다. 이를 보전한다고 보기에는 근로소득공제액이 지나치게 많다. '근로소득공제'를 비롯해서 임금근로자에게만 적용하는 공제 항목이 있는 현실적인 이유는 단순하다. 자영업자는 실제보다 소득을 줄여서 신고하기 때문에, 신고소득액이 동일하면 임금근로자의 소득세를 더 많이 깎아줘야 한다는 것이다(전병목 안종석, 2005 논의 참조).

근로소득공제 외에도 신용카드(현금영수증) 사용이나 연금저축 같은 조세특례제한법상의 소득공제도 임금근로자에게만 적용된다. 그리고 의료비와 교육비 공제 같은 특별소득공제의 경우 간편 장부를 사용하거나 신용카드(현금영수증)를 받지 않는 일부 자영업자는 제외된다.

2. 자영업자와 근로소득자 실효소득세율 비교

자영업자는 소득을 줄여서 신고한다. 이걸 상쇄하려고 임금근로자에게 더 많은 소득공제 혜택을 준다. 그렇다면 ‘축소 신고’와 ‘더 많은 공제’의 결과로서, 동일한 ‘실제’ 소득일 때 두 집단 중 어느 쪽의 소득세가 더 적을까?

동일한 ‘신고’ 소득이라면 소득공제는 임금근로자가 더 많다. 그래서 소득세액은 자영업자가 더 많다. 가령 국세청 자료(국세통계연보 2014년 기준)에 따르면 연소득이 5,000만원인 임금근로자는 대략 160만원을 소득세로 내는 데 비해 자영업자는 420만원 가량 낸다. 만일 임금근로자가 420만원을 소득세로 내려면 연소득이 7,500만원은 되어야 한다. 역으로 160만원을 소득세로 내는 자영업자의 신고소득은 3,000만원 정도이다.

그렇다면 자영업자의 소득 ‘축소’는 어느 정도일까? 2절에서 논의한 자영업자 소득 탈루를 추정 기존연구 중 가장 최근 연구인 신영임 강민지(2014)는 2003-2012 기간의 가계조사 자료를 이용하여 10분위 소득계층별로 자영업자의 소득탈루율을 추정하였다. 2절에서 논의하였듯 자영업자의 소득 탈루율은 최근으로 올수록 줄어드는 경향이 있는데, 이는 신영임 강민지(2014)에서도 마찬가지다. 2003년에는 25.3%였던 소득 탈루율 평균이 2012년에는 20.8%로 감소하였다. 특히 2010년 이후 3년간은 거의 변화가 없어서 2010년 20.5%, 2011년 20.8%, 2012년 20.8%이다.

본 글에서는 자영업자의 소득 축소 규모를 추정하는 데에 신영임 강민지(2014)의 결과를 이용한다. 구체적으로 그 연구의 결과 중에서 최근 3년(2010-2012) 기간의 평균값을 적용한다. 10분위 소득계층별 2010-2012 기간의 (가계조사의) 보고소득과 실제소득 추정값은 <표 2>와 같다. 그런데 2절에서 논의하였듯 가계조사의 보고소득은 국세청 신고소득의 상한(upper bound)에 해당한다. 즉 실제 국세청 신고소득은 가계조사의 보고소득에 비해 더 작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하지만 얼마나 더 작을지는 알기 어렵다. 성명재(2008)의 연구에서 가장 최근 연도인 2006년의 경우 국세청 신고소득은 가계조사 보고소득의 96%인 것으로 추정하였다. 물론 성명재(2008)의 연구는 전체 평균을 비교한 것이므로 제한적이지만, 다른 정보가 없으므로 일단 국세청 신고소득은 모든 소득계층에서 가계조사 보고소득의 96%인 것으로 가정했다. 그 결과가 <표 2>의 ‘국세청신고소득’이다. 마지막 열의 ‘소득탈루율’은 ‘실제소득’에 비해 ‘국세청 신고소득’이 얼마나 축소되었는가를 나타낸다.

〈표 2〉 자영업자의 소득계층별 신고소득과 실제소득 추정치

(단위: 만원)

	가계조사 보고소득	실제소득	국세청 신고소득	소득 탈루율
하위10%	1,064	1,254	1,022	18.5%
10~20%	1,919	2,290	1,843	19.5%
20~30%	2,428	2,937	2,331	20.6%
30~40%	2,889	3,483	2,774	20.4%
40~50%	3,343	4,029	3,209	20.4%
50~60%	3,746	4,601	3,596	21.8%
60~70%	4,074	5,270	3,911	25.8%
70~80%	4,678	6,116	4,491	26.6%
80~90%	5,283	7,444	5,072	31.9%
상위10%	7,223	11,201	6,934	38.1%

신영임 강민지(2014)와 성명재(2008) 연구 결과 이용하여 재작성.

〈표 2〉를 보면 소득이 높을수록 탈루율도 높은 경향이 있다. 신고소득이 1,850만원 정도인 자영업자의 실제소득은 2,300만원 정도이며, 신고소득이 3,200만원 정도인 자영업자의 실제소득은 4,000만원 정도다. 그리고 신고소득이 4,500만원 정도인 자영업자의 실제소득은 6,100만원 정도, 신고소득이 7000만원 정도인 자영업자의 실제소득은 11,000만원이 넘는다.

한편 국세청이 발간하는 〈국세통계연보〉에는 임금근로자와 자영업자의 신고소득 구간별 소득액과 소득세액 통계가 제공되어 있다. 이를 이용하면 각 신고소득구간별 1인당 평균 소득액, 소득세액, 그리고 실효소득세율을 알 수 있다. 이 결과는 〈표 3〉에 제시되어 있다.

〈표 3〉 임금근로자와 자영업자의 신고소득 구간별 세액

(2014년 소득 기준, 단위:만원)

신고소득구간	임금근로자			자영업자		
	평균소득	평균세액	평균 실효세율	평균소득	평균세액	평균 실효세율
10억초과	185,728.4	62,664.3	33.7%	234,837.8	74,302.4	31.6%
5억초과-10억이하	66,689.0	20,049.1	30.1%	67,380.0	20,399.3	30.3%
3억초과-5억이하	37,385.8	9,975.6	26.7%	37,872.3	10,583.2	27.9%
2억초과-3억이하	23,918.7	5,458.4	22.8%	24,233.0	5,990.4	24.7%
1억초과-2억이하	12,407.0	1,601.8	12.9%	13,589.6	2,490.4	18.3%
8천만초과-1억이하	8,882.4	728.7	8.2%	8,943.9	1,152.0	12.9%
6천만초과-8천만이하	6,885.2	363.0	5.3%	6,924.5	740.4	10.7%
4천만초과-6천만이하	4,944.0	159.3	3.2%	4,902.8	399.1	8.1%
2천만초과-4천만이하	2,886.5	36.4	1.3%	2,801.6	158.0	5.6%
2천만이하	1,695.5	23.5	1.4%	1,431.8	37.8	2.6%

2015년 국세통계연보 자료로부터 계산.

〈표 3〉을 보면 2억원 이하 구간에서는 자영업자의 실효세율이 임금근로자에 비해 상당히 높다. 그리고 2억원 초과-10억원 이하 구간에서는 두 집단의 실효세율이 유사하며, 소득액이 10억원을 초과해야 임금근로자의 실효세율이 더 높아진다.

그러나 〈표 3〉은 신고소득을 기준으로 두 집단의 실효세율을 비교한 것이다. 지금까지 논의한 바와 같이 임금근로자들은 실제소득과 신고소득이 동일하다고 할 수 있는데 비해, 자영업자들은 실제소득보다 줄여서 신고한다. 따라서 자영업자의 신고소득이 아니라 실제소득을 추정하여 임금근로자의 신고소득과 비교해야 타당한 비교가 가능하다.

〈표 2〉에는 자영업자의 소득계층별 소득탈루율 추정치가 제시되어 있다. 따라서 이 통계를 이용하면 자영업자의 신고소득으로부터 실제소득을 추정할 수 있다. 그런데 〈표 2〉와 〈표 3〉에 제시된 소득구간은 서로 다르다. 〈표 2〉는 소득10분위 구간으로 제시하고 있다. 하지만 〈표 3〉은 10개의 소득액 구간으로 제시되어 있다. 따라서 〈표 2〉의 통계를 〈표 3〉에 적용하려면 구간별 소득 분포에 대한 일정한 가정이 필요하며, 추정된 실효소득세율에도 어느 정도의 오차가 포함될 수밖에 없다.

〈표 2〉에 비해 훨씬 세분된 소득 구간별 신고소득 및 소득세액 자료가 있다면 보다 정확한 비교가 가능하다. 국세청은 국정감사자료로서 소득 100분위별 신고소득 및 소득세액 자료를 제공하고 있다.⁹⁾ 따라서 이 자료를 〈표 2〉와 결합하면 보다 정확하게 두 집단의 실효소득세율을 비교할 수 있다. 그 결과가 〈표 4〉에 제시되어 있다. 두 집단의 실효소득세율 추정 방법을 기술하면 다음과 같다.

우선 대부분의 소득세 납부자가 포함되어 있는 1천만원-2억원 구간에서 11개의 소득액을 선정하고, 소득100분위 과세자료로부터 임금근로자의 각 소득액에 대응하는 소득세액과 실효소득세율을 구한다. 다음으로 자영업자의 경우는 〈표 2〉의 소득탈루율 추정치를 적용하여 실제소득이 앞서 선정한 11개 소득액일 때의 신고소득액을 구한다. 그리고 그 신고소득액에 해당하는 소득세액을 11개 (실제)소득액에 상응하는 소득세액으로 간주한다. 예를 들면 실제소득이 5,000만원인 자영업자의 국세청신고소득은 3,828만원이므로, 100분위자료에서 3,828만원에 해당하는 소득세액을 대입하여, 실효소득세율을 구했다. 정확히 일치하는 소득액이 없을 경우에는 전후의 자료로부터 보간법을 적용하여 계산했다.

9) 이 자료는 일반에게 공개되는 것은 아니며, 국회의원실로부터 제공받았다.

〈표 4〉 임금근로자와 자영업자의 신고소득 구간별 세액

(만원, %)

소득액	실효세율		
	자영업자	임금소득자	차이
2억원	17.6%	21.0%	-3.4%P
1억5천만원	13.9%	13.2%	0.7%P
1억원	10.1%	8.4%	1.7%P
8천만원	8.3%	6.2%	2.2%P
6천만원	6.8%	4.0%	2.9%P
5천만원	6.1%	2.9%	3.2%P
4천만원	5.3%	1.9%	3.4%P
3천만원	4.5%	1.1%	3.4%P
2천만원	3.0%	0.6%	2.4%P
1천5백만	2.5%	0.4%	2.1%P
1천만원	2.1%	0.2%	1.9%P

마지막 열의 ‘차이’는 자영업자와 임금근로자의 실효세율 차이를 나타낸다. 이를 보면 납세자의 절대 다수(대략 97%)가 속해있는 1억 5천만 원 이하에서는 자영업자의 소득세 실효세율이 임금근로자보다 더 높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특히 5천만 원 이하에서는 자영업자의 실효세율이 임금근로자의 두 배가 넘는다.¹⁰⁾ 한편 이를 국제통계연보에 근거한 〈표 3〉과 비교하면, 자영업자의 소득세 부담이 더 큰 구간이 대폭 낮아졌음을 알 수 있다. 〈표 3〉에서는 소득액이 10억원이 넘어가야 비로소 임금근로자의 소득세 부담률이 높아졌지만, 이에 비해 〈표 4〉에서는 소득액이 2억원 이상이면 뚜렷하게 임금근로자의 소득세 부담률이 높다. 그리고 2억원 미만 구간에서 자영업자와 임금근로자의 실효세율 격차도 대폭 줄었다. 이는 물론 〈표 3〉은 신고소득을 기준으로 한 것이고 〈표 4〉는 (추정된) 실제소득을 기준으로 한 것이기 때문에 그렇다.

〈표 4〉의 결과를 보면 대다수의 자영업자는 임금근로자에 비해 소득세를 더 많이 낸다. 이 결과가 의외로 생각될 수 있다. 사실 이 결과는 다소 과장된 것일 수 있다. 그 이유 중 하나는 〈표 2〉에 제시한 소득 탈루율의 정의 때문이다. 자영업자의 소득은 ‘수입(매출)-경비’다. 따라서 소득을 축소 신고 하는 데는 두 가지 방법이 가능하다. 하나는 수입을 줄이는 것이고, 또 하나는 경비를 부풀리는 것이다. 통상 소득 탈루율이라고 할 때는 수입 축소만을 의미하며, 경비 부풀리기는 포함하지 않는다. 하지만

10) 이 표에는 제시하지 않았지만 소득액이 3억, 5억처럼 매우 클 때는 임금근로자의 실효세율이 자영업자의 비해 훨씬 더 많다. 하지만 이러한 고액소득자는 많지 않다.

자영업자들은 흔히 사업과 관련 없는 개인용도 지출까지 경비로 처리하는 경향이 있다. 이렇게 부풀린 경비까지 고려하면 소득 파악률은 더 낮아질 수 있다.¹¹⁾

아울러 자영업자는 임금근로자와 달리 부가가치세 탈세를 통하여 이득을 취할 수도 있다. 수입을 축소 신고하면 소득세뿐만 아니라 부가가치세도 덜 낸다. 그런데 부가가치세는 이미 소비자가(최종 공급) 자영업자에게 지불한 것을, 자영업자가 과세당국에 내는 것이다. 따라서 수입 축소 신고를 통해 자영업자는 이중의 이득을 얻는다고 할 수 있다.

이런 점들을 감안하면 <표 4>에서 자영업자가 임금근로자에 비해 세 부담이 더 크다는 것, 혹은 두 집단 간 소득세 부과의 형평성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이 해석하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일단 하위소득계층은 임금근로자나 자영업자나 소득세를 거의 안 내니 세 부담의 형평성을 논할 실익이 없다. 중간소득계층에서는 자영업자의 소득세 부담이 더 많고 상위소득계층에서는 임금근로자의 부담이 더 많다. 소득이 올라갈수록 자영업자의 상대적인 초과 세 부담은 줄어든다.

V. 결론: 조세 정치의 필요성

우리나라의 조세부담 수준은 낮다. 그 원인 중에는 세 부담이 불공평하다는 인식이 한 몫 한다. 임금근로자는 '자영업자는 소득세 탈루가 심한데 우리는 그대로 내야하니 불공평하다'고 인식한다. 반면에 자영업자는 '소득세뿐만 아니라 부가가치세도 부담해야 하니 불공평하다'고 인식한다. 이런 인식이 사실인지, 왜 그렇게 생각하는지 지금까지 살펴봤다.

현금거래가 일반적이던 과거에는 자영업자의 소득 파악률이 매우 낮았다. 그러나 2000년대 이후 신용카드 사용과 현금영수증 발급이 보편화되면서 소득 파악률은 괄목할 만큼 높아졌다. 여전히 매출이 불투명한 업종이 있고, 또 부풀린 경비처리를 통해서 신고소득을 낮출 여지는 있다. 하지만 과거보다 자영업자의 축소 소득신고가 줄어든 것은 사실이다. 그래서 소득세만 놓고 본다면 중위소득 계층 이하는 오히려 자영업자가 소득세를 더 많이 낸다. 상위소득 계층은 아직도 자영업자가 더 적게 내지만

11) 가계조사 자료를 이용하여 실제소득을 추정할 때는 가계 소비 자료를 이용한다. 따라서 가계 소비 지출 항목에 사업 경비로 구매한 것들이 포함된다면 그만큼 경비 부풀리기에 따른 탈루액 규모는 줄어든다. 그러나 성명재(2008)의 결과 등을 고려하면, 이러한 효과(가계조사의 보고소득이 경비 부풀리기로 인한 탈루소득을 포함하는 것)는 미미한 것으로 판단된다.

과거보다는 소득세 탈루가 줄었다. 결국 임금근로자들이 자영업자보다 소득세를 많이 낸다고 생각하는 것은 상당부분 오해다. 오히려 이제는 두 집단의 형평성을 맞추려면 임금근로자에게만 적용했던 근로소득공제 혜택을 줄이는 것이 타당하다.

그렇다면 왜 여전히 많은 사람들이 자영업자는 소득세를 적게 낸다고 생각할까? 두 가지 이유를 생각해 볼 수 있다. 하나는 과거의 기억 때문일 것이다. 즉 과거 자영업자의 소득세 탈루가 심했을 때의 인식을 여전히 갖고 있기 때문일 것이다. 또 하나는 아직도 고소득 자영업자의 소득세 탈루액이 크기 때문일 것이다. 즉 소수 고소득 자영업자의 탈세 행태가 언론 등에 의해 노출되는데, 이를 자영업자 일반으로 확대 해석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일 것이다. 소수의 행태를 일반화해서 이해하는 것은 흔히 있는 일이다. 이를 불식하려면 소수의 일탈이라도 엄격하게 법 집행을 해야 한다. 즉 다수는 안 그렇다고 할 것이 아니라, 소수라도 그런 경우는 없도록 해야 한다.

부가가치세는 자신이 부담한다는 자영업자들의 인식 역시 오해다. 부가가치세를 처음 시행한 40년 전에는 그런 측면이 있었다. 그러나 이후 시간이 흐르면서 가격에 다 반영되었다. 지금의 부가가치세는 매출의 10%를 차지하는 비용일 뿐이다. 이걸 감안해서 가격을 매기고 마진을 남겼다.

사실 자영업자를 힘들게 하는 것은 과거보다 투명해진 조세행정이다. 매출 축소가 힘든 만큼 소득세와 부가가치세 부담이 늘었다. 과거에는 세금 탈루를 전제로 마진을 남겼는데, 세금 탈루액이 줄어들니 과거보다 마진이 줄었다. 자영업자 입장에서는 일정 부분 억울하게 느낄 수도 있다. 하지만 이걸 비정상을 정상화해 가는 과정이다. 적응해야 한다.

지금까지의 논의를 정리하자. 임금근로자의 소득세 많이 낸다는 인식이나 자영업자의 부가가치세는 자영업자의 부담이라는 인식은 사실과 다르다. 이러한 오해는 풀어야 한다. 보다 적극적인 홍보, 일부의 탈세라도 엄격한 법 집행 등의 노력을 통해서 풀어 나가야 한다. 이런 노력을 통해서 오해를 풀어간다면 세금이 불공평하다는 인식은 지금보다 줄어들 것이다.

하지만 분명히 할 것이 있다. 세금이 불공평하다는 인식의 감소가 곧바로 증세에 대한 지지로 이어지지는 않을 것이라는 점이다. 조세는 정치다. 내 주머니에서 강제로 가져가는 것이니 만큼 치열한 공방이 난무하는 정치다. 오해를 풀어야 할 뿐만 아니라 반대를 설득하고 지지를 이끌어 내야 한다. 힘들어도 해야 할 것은 하는 것이 제대로 된 정치다. 이 글이 올바른 조세 정치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란다.

■ 참고문헌

- 강석훈 박찬용. 2003. “소득분배 추정방법의 한계에 대한 고찰.” 《재정논집》 18(1):29-49.
- 김낙년. 2013. “한국의 소득분배.” 낙성대 경제연구소 워킹페이퍼2013-06.
- 김봉근 정철 박명호. 2008. “패널자료를 이용한 자영업자의 소득 축소보고율 분석: 영 켈곡선이동과 실질소득 추정.” 《경제학연구》 56(3):151-170.
- 김현숙. 2006. “자영업자 사업소득 추정방법에 대한 소고.” 《재정포럼》 2006.12.
- 김형준 박명호. 2007. “지하경제 규모 추정과 정책적 함의.” 《미래 한국의 조세재정 정책》
- 문춘걸 김영귀. 2002. “가구소비실태조사 자료를 이용한 한국의 지하경제 규모의 추정.” 《공공경제》 7(2): 3-29.
- 박명호. 2009. “우리나라 자영업자의 소득 탈루율 추이 분석.” 《재정포럼》 2009.11.
- _____. 2010. “우리나라 자영업자가구의 소득 탈루율 추이 분석.” 《재정포럼》 2010.3.
- 성명재. 1999. 《종합소득세와 부가가치세 탈세규모의 추정과 세수추계의 정확성 제고》. 한국조세연구원.
- _____. 2002. 《조세정책의 소득재분배 효과 분석에 관한 연구: 도시가계조사자료를 중심으로》. 한국조세연구원.
- _____. 2008. “사업소득세의 소득포착률 및 탈세규모의 추정.” 《재정학연구》 1(3): 155-188.
- _____. 2011. “가계동향조사와 국세통계연보 비교를 통한 사업소득세 탈루규모의 추정 연구.” 《세무학연구》 28(2): 227-255.
- 성명재 박기백. 2008. “조세 재정지출의 소득재분배 효과: 소비세 및 현물급여 포함.” 《재정학 연구》 1(1): 63-94.
- 성명재 전영준. 1999. 《경제위기 1년간 소득세 소비세 부담분포의 변화와 조세정책 방향》. 한국조세연구원.
- 성명재 전영준. 2009. 《소득세 공제체계 개편의 형평 과표 양성화 효과분석: 인적공제 개편을 중심으로》. 한국조세연구원.
- 신영임 강민지. 2014. 《자영업자의 소득 탈루율 및 탈세규모의 추정》 국회예산정책처.
- 안종범 전승훈 김동준. 2010. “소득세 과세단위 변경의 경제적 효과.” 《한국경제연

- 구» 28(2):171-199.
- 유일호. 1998. “우리나라 탈세규모의 추정: 소득세와 부가가치세.” 《조세행정과 정책 과제》 98(4):39-68.
- 이철인. 1998. “패널자료를 이용한 탈루규모의 추정.” 《공공경제》 3(1): 67-96.
- 임상엽 정정운. 2013. 《2013 세법개론》. 상경사.
- 전병목 안종석. 2005.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의 과세형평성에 관한 연구》. 한국조세연구원.
- 전승훈 신영임. 2009. “자영업자와 근로소득자의 과세형평성에 관한 연구.” 한국재정학회 추계학술대회.
- 현진권 김용대. 2003. “자영업자들의 신고소득수준은 향상되고 있는가.” 《재정논집》 18(1): 153-163.
- 현진권 임병인. 2002. “한국의 유효소득세함수 추정.” 《재정논집》 17(1): 95-108.
- Lyssiotou, Panayiota, Panos Pashardes, & Thanasis Stengos. 2004. “Estimates of the Black Economy Based on Consumer Demand Approaches.” *The Economic Journal*, 114(497) : 622-640.
- Musgrave, Richard A. 1959. *The Theory of Public Finance: A Study in Public Economy*. New York: McGraw-Hill.
- Pissarides, Christopher A. & Guglielmo Weber. 1989. “An Expenditure - Based Estimate of Britain's Black Economy.” *Journal of Public Economics*, 39(1) : 17-32.
- Rosen, Harvey & Ted Gayer(2008), *Public Finance* 9th edition. McGraw Hill. 이영전영준 이철인 옮김(2011) 《로젠의 재정학》, McGraw Hill Korea
- 《레디앙》. 2009. “부마항쟁에서 나온 부가세 폐지 요구.” 2009년 5월 19.
- 《오마이뉴스》. 2003. “자영업자의 탈세, 그 불가피성에 대해.” 7월 25일.
- _____. 2016. “자영업자는 세금탈루 주범? 오해입니다.” 4월 11일.
- 《국세통계연보》. 2014. 국세청 발행.
- 《OECD 홈페이지》. OECD.Stat. <http://stats.oecd.org/>